


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고시

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일상과 조화되는 사회적 대응체계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다음과 같이 재연장하여 고시합니다.

2022. 2. 6.

전라남도지사 

1 적용기간 : '22. 2. 7.(월) 0시 ~ '22. 2. 20.(일) 24시

2 적용대상

-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- 전라남도 내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책임자·이용자 등
- 집합·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의 관계자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및 참석자 등

3 적용내용

1.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 1, 3 확인)

가.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 등 시설

| |
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의무적용 시설(11종)</p> <p>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 ▲ PC방 ▲ 멀티방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실내체육시설 ▲ 목욕장업 ▲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 ▲ 식당·카페 ▲ 파티룸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</p>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미적용 시설(19종)</p> <p>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 ▲ 오락실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외) ▲ 실외체육시설 ▲ 숙박시설 ▲ 키즈카페 ▲ 돌잔치 ▲ 전시회·박람회 ▲ 이·미용업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▲ 도서관 ▲ 영화관·공연장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학원 등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</p>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교시설 및 기타시설(3종)</p> <p>▲ 종교시설 ▲ 콜센터 ▲ 물류센터</p> |

※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,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(이용)시 ▲접종완료자와 ▲PCR음성확인자 등*, ▲예외자**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

* 접종완료자,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** 18세 이하인 자('22.3.1.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, 계도기간: '22.3.1.~'22.3.31.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

나.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

○ 공통 기본 방역수칙(모든 시설 적용)

-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· 방역수칙 게시·안내 | ·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 | · 마스크 착용 |
| ·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| ·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| · 일 1회 이상 소독 |

- 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: 계도기간 '22. 2. 7. ~ 2. 25.
 - (학원 등)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또는 2㎡당 1명 준수
 - (독서실·스터디카페) 좌석 한 칸 띄어앉기(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)
- 시설유형별 방역수칙 : '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1)' 및 '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(붙임3)' 확인

【 경과규정 등 】

-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: '22. 2. 21.(월) 05시까지 적용
- ②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 연령 확대 : '22. 3. 1.(화) ~ 별도안내 시까지
 - ▶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(연령) : 18세 이하 → 11세 이하인 자
 - ▶ 계도기간 : 2022년 3월 1일(화) ~ 2022년 3월 31일(목)
- ③ 학원 등 독서실·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조치 계도기간 : '22. 2. 7.(월) ~ '22. 2. 25.(금)

2.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 2 확인)

가. 사적 모임 제한(전국 6명까지 가능)

- (조치내용)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·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- ※ (식당·카페) 접종완료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
- (제한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- (인원산정) '6명의 범위'에는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

【 사적모임 적용 예외 】

<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>

▲ 동거가족 모임
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
▲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▲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나. 사적 모임 외 집합·모임·행사 제한

-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 진행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
 - (1~49명)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·행사 가능
 - (50~2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 가능
 - (300명 이상)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·지자체 사전 승인 후 가능
- * 접종완료자, 완치자, PCR음성확인서 소지자, 18세 이하인 자('22.3.1.부터는 11세 이하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(관련 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)
- 결혼식장, 실내·외 체육시설 등은 아래와 같이 운영 가능
 - (결혼식장) 위 인원제한(1~299명)을 동일 적용하되,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(혼합적용 불가)
 - (실외체육시설) 사적 모임 제한(전국 6명) 초과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,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 - (실내체육시설)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(시합 등) 가능

【적용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/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】

- ▲ (모임·행사예시)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- ▲ (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)
 - (결혼식장취식소) 최대 250명 가능(미접종자 49명+ 접종완료자 201명)
 - (전시회·박람회)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, 50명 미만 행사는 4㎡당 1명 밀집도 제한
 - ※ 부스 내 상주인력 기준(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접종완료자)은 권고수칙으로 적용
- ▲ (국제회의·학술행사)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,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,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준수

○ 집합·모임·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(취식금지 원칙)

- (1명~49명)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'식당'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
- (50명~299명)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·행사 중 '식당'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
- (300명 이상)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

다.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

-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* 및 기업의 경영활동*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되,
 -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,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단,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되는 각종 회의 등(상임위원회, 본회의 등 국회(지방의회 회의 포함)는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
- 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·송출 등

라. 시험은 수험생 간 1.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

4 위반 시 조치사항 등

- 불임의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방역수칙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.
-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5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및 제3항, 제80조제7호, 제81조제10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

- 불임
1.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 2.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 3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

참고1

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('22. 2. 7. ~ 2. 20.)

용어 정리

- (사적모임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회갑·칠순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, 가족·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
- (접종완료자 등)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, PCR 음성자 등, 18세 이하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
* 18세 이하인 자 → 2022년 3월 1일(화)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로 조정

□ 사적모임 전국 6명까지

-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되, 식당·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의 경우만 예외인정(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)

예시) 식당·카페 이용 예시

전국 공통

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+ 접종완료자 등 0명 ⇒ 1명(O)

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+ 접종완료자 등 1명 ⇒ 2명(X)

□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 시설 조정

- 11개 업종 방역패스 적용
 - 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는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의무적용 시설(11종)

- 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 ▲ PC방 ▲ 멀티방
-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실내체육시설 ▲ 목욕장업 ▲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 ▲ 식당·카페 ▲ 파티룸
-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
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미적용 시설(19종)

-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 ▲ 오락실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외) ▲ 실외체육시설
- ▲ 숙박시설 ▲ 키즈카페 ▲ 돌잔치 ▲ 전시회·박람회 ▲ 이·미용업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▲ 도서관 ▲ 영화관·공연장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학원 등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
-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

종교시설 및 기타시설(3종)

- ▲ 종교시설 ▲ 콜센터 ▲ 물류센터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>

| 구 분 | 접종완료자 (완치자 포함) |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PCR음성 | 의학적사유 | 18세 이하 (22. 3. 1. 부터 11세 이하) |
| 유흥시설 | ○ | × | × | × |
| 경마·경륜·경정/카지노 | ○ | ○ | × | × |
| 노래(코인)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·카페 PC방 실내스포츠경기(관람)장 멀티방 마사지업소·안마소 파티룸 | ○ | ○ | ○ | ○ |
| 입원자·입소자 면회 (고위험시설 별도적용) | ○ | ○ | × | × |
| 노인·장애인 시설이용 | ○ | ○ | × | × |

□ 단계적 일상회복 주요 방역수칙

| 공통 기본 방역수칙(모든 시설 적용)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· 방역수칙 게시·안내 | ·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 | · 실내 마스크 착용 |
| ·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| ·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| · 일 1회 이상 소독 |

| 구분 | 방역수칙 |
|--------------|--|
| 모임·행사 | |
| 사적 모임 | <p>▶ 사적 모임(가족모임 포함)은 접종 구분없이 6명까지</p> <p>* 방역상황에 따라 도와 협의하여 사적모임 기준 완화 및 강화 조치 가능</p> <p>* 예외</p> <p>① 동거가족 모임,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인력, 임종을 지키는 경우</p> <p>② 실외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</p> <p>③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(단, 유흥종사자는 포함)</p> |
| 행사·집회 | <p>▶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</p> <p>▶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</p> <p>*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띄우기,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</p> <p>* (행사) 단체법안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기념행사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과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</p> |

| 구분 | 방역수칙 |
|--|---|
|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| |
| 유흥시설 5종 [유흥·단란감성주점] [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] 콜라텍·무도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21시까지(익일 05시까지 제한)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완료자, 완치자 ▶ (취식 가능 여부) 유흥시설 가능, 콜라텍·무도장 불가능 |
| 노래(코인)연습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21시까지(익일 05시까지 제한)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<p>* 노래(코인)연습장과 동일·유사한 운영시설(ex. 뮤비방, 오락실 內 노래방)은 동일 적용</p> |
|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·경정·경마장 카지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(익일 05시까지 제한), 카지노는 22시까지(익일 05시까지 제한), 경륜·경마·경정은 제한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<p>*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(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) 제한적 허용</p> <p>*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</p> <p>* 풋살장, 농구장 등 특성상 일정 수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시설 등의 경우,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(시합 등) 가능</p> |
| 식당·카페 (홀덤펍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21시까지(익일 05시까지 제한) <p>* 식당·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의 경우만 예외 인정</p> <p>* 21시 ~ 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로만 이용(편의점 포함)</p> <p>↳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</p> <p>* (편의점 또는 휴게음식점) 단순 물품 구매의 경우 방역패스 미적용하되 실내·외 취식하는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21시까지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(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)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|
| PC방 멀티방(홀덤펍게임장)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22시까지(익일 05시까지 제한) <p>*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개설 신고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을 제외하고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자유업 마사지업소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<p>* 파티룸은 취식가능,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(영화관·공연장) 또는 좌석 간 칸막이(PC방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</p> |

| 구분 | 방역수칙 |
|---|--|
| 실내스포츠 경기(관람)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*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, 취식 시범 허용 |
|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(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호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22시까지(익일 05시까지 제한) * 단,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(이용) 가능하되,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*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|
|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| |
| 학원 등 (교습소, 직업훈련기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22시까지(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)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▶ (밀 집 도)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또는 2㎡당 1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앉기 예외 ※ 계도기간 : '22. 2. 7. ~ '22. 2. 25. * (관악기, 노래, 연기교습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주노래연기 시 : 칸막이 안에서 실시,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- 착석 시 : 한 방향으로 착석 * (댄스무용 교습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춤출 때 :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|
| 독서실 스테디카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* 별도 섭취 공간(도서관, 독서실·스테디카페)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▶ (밀 집 도)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앉기 예외 ※ 계도기간 : '22. 2. 7. ~ '22. 2. 25. |
|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|
| 영화관공연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22시까지(익일 05시까지 제한) * 단,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(이용) 가능하되,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*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|

| 구분 | 방역수칙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오락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22시까지(익일 05시까지 제한) ▶ (밀 집 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|
| 놀이공원·위터파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밀 집 도) 수용인원의 50%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|
| 실외체육시설 상점·마트·백화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밀 집 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,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매장 내 전 구역 3회 이상 순회 점검 및 점검대장 작성*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- 해당 수칙은 대규모점포 및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(예: 하나로마트)에만 적용</p> |
| 전시회·박람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-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, 좌석 한 칸 띄우기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|
| 국제회의·학술행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밀 집 도)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-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, 좌석 한 칸 띄우기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</p> |

| 구분 | 방역수칙 |
|----------------|---|
| 결혼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밀 집 도) 4㎡당 1명 준수 + 모임·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▶ (이용 가능 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~ 299명까지 * (결혼식)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택일 적용 가능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*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|
| 돌잔치, 장례식, 피로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밀 집 도) 4㎡당 1명 준수 + 모임·행사 기준 적용 ▶ (이용 가능 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~ 299명까지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*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|
| 종교시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밀 집 도)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%까지(최대 299명까지)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%까지 *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 ~ 6개월(180일)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*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, 식순담당,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▶ (기타) 통성기도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소모임·성가대 가능(마스크 상시 착용) |
| 고위험 사업장 | |
| 콜센터 물류센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|

참고2

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

| 시군 | 총계 | 보건소 운영시간 | | | 의료기관 운영시간 | | | |
|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평일 | 토요일 | 공휴일 | 기관명 | 평일 | 토요일 | 공휴일 |
| 합계 | 56 | 22 | | | 35 | | | |
| 목포 | 7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목포한국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| | | | | 목포기독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| | | | | 목포중앙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| | | | | 목포시의료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| | | | | 세안종합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| | | | | 전남중앙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여수 | 5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여천전남병원 | 09시~17시 | 09시~13시 | 미운영 |
| | | | | | 여수전남병원 | 09시~17시 | 09시~12시 | 미운영 |
| | | | | | 여수한국병원 | 09시~17시 | 09시~12시 | 미운영 |
| | | | | | 여수제일병원 | 09시~18시 | 09시~13시 | 미운영 |
| 순천 | 3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성가롤로병원 | 08시~11시 | 08시~11시 | 08시~11시 |
| | | | | | 순천의료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| | | | | 순천병원 | 09시~17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나주 | 2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나주종합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광양 | 2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광양사랑병원 | 09시~11시 | 09시~11시 | 미운영 |
| 담양 | 2 | 09시~17시 | 09시~16시 | 09시~16시 | 담양사랑병원 | 08시~17시 | 미운영 | 미운영 |
| 곡성 | 2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곡성사랑병원 | 09시~17시 | 미운영 | 미운영 |
| 구례 | 2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구례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고흥 | 3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고흥종합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| | | | | 녹동현대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보성 | 3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보성아산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| | | | | 별교삼호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화순 | 3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화순전남대학교병원 | 09시~16시 | 09시~13시 | 09시~13시 |
| | | | | | 화순성심병원 | 09시~18시 | 미운영 | 미운영 |
| 장흥 | 2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장흥종합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강진 | 2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강진의료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해남 | 3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해남종합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| | | | | 해남우리종합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영암 | 1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- | | | |
| 무안 | 2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무안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함평 | 2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함평성심병원 | 18시~09시 | 00시~24시 | 18시~24시 |
| 영광 | 3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영광종합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| | | | | 영광기독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장성 | 2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장성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완도 | 2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완도대성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진도 | 2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진도한국병원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 00시~24시 |
| 신안 | 1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09시~18시 | - | | | |